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220
----------	-------

발의연월일 : 2025. 9. 24.

발 의 자 : 박균택 · 권철승 · 이건태
박상혁 · 김기표 · 박지혜
정진욱 · 황명선 · 정준호
박홍배 · 한민수 · 한준호
김승원 · 박해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도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해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특히 위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함.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체납자에 대한 감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는 바, 「외국환거래법」에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94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제6호까지의”를 “제7호까지의”로 한다.

7. 「외국환거래법」 제33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794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 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 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 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 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② ~ ⑤ (생 략)	법률 제20794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출국의 금지) ①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외국환거래법」 제33조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 습 과태료 체납자 8. -----제7호까 지의-----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